

2023년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군민장학생 선발계획

○ 영동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면학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장차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함

1.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구 분	합계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 급 액
계	375명	50명	138명	187명	400,000천원
우수 장학금	219명	-	67명 (관내)	105명 (관외)	· 고등학생: 500천원 · 대학생: 1,500천원
			3명 (관외)	44명 (유원대)	
영동인재 장학금	71명	-	36명 (학교별 배정)	35명	· 고등학생: 800천원 · 대학생: 2,000천원
우수졸업생 장학금	26명	21명	5명	-	· 초·중생: 300천원 · 고등학생: 500천원 학교별 1명
희망 장학금	장애	16명	9명	7명	-
	북한이탈 주민자녀	10명	9명	1명	-
특기장학금(개인)	28명	11명	17명	-	
특기장학금(단체)	초·중·고 7,200천원 한도				· 초·중생: 1인 100천원 · 고등학생: 1인 150천원
난계국악장학금	5명	-	2명	3명	· 고등학생: 500천원 · 대학생: 1,500천원

※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생활비로 지급**되기에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 제외대상 : 올해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 등)
- 이외의 타 기관의 장학생일 경우는 해당 기관에 중복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

장학생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이상** 계속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조손가정 포함)

※ 학생의 주소가 영동군이 아니라서 부모의 주소요건(6개월 이상 거주)으로 신청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함(단,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부문별 자격 기준>

구분	선발예정인원	신 청 자 격
우수 장학금	고등학생 (70명) ※관외고 3명 포함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순위가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 가정사정이 곤란(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는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 (149명)	○ 대학(전문대, 원격대학 포함)에 재학 중 또는 복학한 자로서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 유원대학교 선발인원 44명(전체 인원의 30%)
영동인재 장학금 (신설)	고등학생 (36명)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순위가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1등급 이내인 자 ※ 단, 평균 1등급 이내에 학생이 없을 경우, 상위 3등급 이내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지급
	대학생 (35명)	○ 대학(원격대학 제외)에 재학 중 또는 복학한 자로서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우수 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 조건(95점 이상) 해당 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지급
우수 졸업생 장학금	초·중·고 (26명) ※학교별 1명	○ 내년도 졸업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며 타 학생의 모범을 보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학교장 재량에 따라 1명 추천 (예시 : 모범, 성적, 효행 등 추천사유 명시)

희망 장학금	초·중(9명) 고(7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초, 중, 고등학생
	초·중(9명) 고(1명)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초, 중, 고등학생
특기 장학금 (개인)	초·중(11명) 고(17명)	○ 공인된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기타 기능) 전국단위이상 대회(국제대회 제외)에서 3위 이내 입상 한 초·중·고등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특기 장학금 (단체)	초·중·고 (720만원 한도)	○ 공인된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기타 기능) 전국단위이상 대회(국제대회 제외)에서 단체로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 한 초·중·고등학생팀
난계국악 장학금	고(2명) 대(3명)	○ 국악관련 전공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 본인의 전공 또는 학과가 국악계열임을 증빙 할 자료 (대학 : 재학증명, 고등 : 생활기록부)

- ※ 장학생 신청은 국내 초·중·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 중복 부문 신청 불가능 (예 : 우수와 난계국악 장학생 중복 신청 불가능)
☞ 중복 신청건은 접수 불가능, 반드시 1가지 부문을 선택해야함
- ※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학생 선발이 가능함.
- ※ 접수가 미달된 부문의 금액은 선발시 다른 부문으로 조정 될 수 있음
(예: A부문이 10명 선발이었으나 7명만 신청, 남은 3명분의 금액은 B부문으로 조정)

〈장학금 지급액〉

- 개 인 : 초·중 30만원 / 고 50만원 / 대 150만원
※ 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의 60% 이내
- 영동인재 장학금 : 고 80만원 / 대 200만원
- 특기단체 : 초·중 1인당 10만원 / 고 1인당 15만원
※ 단체부문의 총 장학금은 720만원이며,
초·중학생 단체는 1인당 10만원(상한액 120만원),
고등학생 단체는 1인당 15만원(상한액 200만원).

〈제외대상〉

-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중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은 자
(단,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까지 수혜 가능)
예)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령가능 / 중·고·대학교 재학중 최대 2회 수령 가능
- 당해연도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등)
- 대학교 재학생 대상의 국외대학 및 대학원생
- 특기장학생(개인) 중 공인되지 않은 대회에서 입상한 자

〈평정기준〉

- 우수, 희망, 난계국악
: 성적 50%, 건강보험료 20%, 거주기간 20%, 가족사항 10%
- 우수졸업 : 학교장 추천
- 영동인재 : 성적 100%
- 특기개인 : 특기성적 50%, 건강보험료 20%, 거주기간 20%, 가족사항 10%
- 특기단체 : 특기성적 50%, 1년간 입상횟수 30%, 거주기간 20%

〈동점자 평가 기준〉

- 우수, 희망(북한이탈주민자녀), 난계국악, 특기(개인) 장학금은
1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우선 선정,
2차로 거주 기간이 긴 자를 선정
- 영동인재 장학금은 거주 기간이 긴 자를 우선 선정
- 희망장학금(장애 부문)은 1차로 장애 정도가 큰 자,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

3. 선발절차 및 신청방법

〈선발절차〉

장 학생 선발공고	⇒	장 학생 신청 (읍·면사무소)	⇒	서류심사	⇒	심 의 (소위원회)
9. 7.		9. 8.~9. 20.		9~10월		10월 중
결 정 (이 사 회)	⇒	공고 및 본인통보	⇒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 (읍·면사무소)	⇒	장학금 지급
11월 중		11월 중		11월 중		12월 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9. 8.(금) ~ 9. 20.(수) 09:00~18:00 (주말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 **대학생, 희망장학금(북한이탈주민자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 ▶ **초·중·고등학생(관내)** : 재학중인 학교
 - ▶ **관외 고등학생** : 영동군청 3층 가족행복과

〈구비서류 및 상세설명〉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우수	영동 인재	우수 졸업	희망	특기 개인	특기 단체	국악
1-1	장학생 신청서	○	○	○	○	○	○	○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	○	○
2	주민등록등본	○	○	○	○	○	○	○
3	주민등록초본	○	○	○	○	○	○	○
4	가족관계증명서	○	○		○	○		○
5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		○
6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		○			○
7	재학증명서	○	○					○
8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9	특기성적증명서(상장 사본 등)					○	○	
10	국악관련 전공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

- 1-1) 장학생 신청서 1부.
-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 주소에 거주중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3) 주민등록초본 1부. (장학생 신청자의 영동군 전입일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 부, 모, 학생 본인 중에서 (주소 옮긴적 없이) 영동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초본을 제출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다시 전입해온 경우 마지막에 영동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현재까지로 계산됨)
 - ※ 대학생은 등·초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과 부모의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만 제출)
- 5)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3년 8월 납부 내역) **다음장 표 참조**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인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
- 6)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대학생 : 2023년 1학기 성적의 백분위 환산 점수 표기
 - 백분위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Q & A 7번 참고
 - (2023년 2학기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제출)
 - 초·중·고등학생 : '2023년 1학기 성적증명서
 - ※ 성적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1학기 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7)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관외학교 학생) 1부.
- 8)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9) 특기성적증명서 1부. (상장 사본 제출)
 - ※ 가산점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입상한 내역** 전부 제출
- 10) 국악 관련 전공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난계국악 장학생만 해당**)
 -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에 전공(국악분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로 대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황별 제출 방법 (필독)

부·모가 보험료 납부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씩
 다른 가족이 보험료 납부 :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납부하는 사람의 납부확인서 1부.
 학생이 본인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2부)**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

☞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미납부자(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미납부 ①

(다른 가족이 부모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및
 부·모 모두의 **자격득실 확인서 2부** 제출
 예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건강보험을 형이 납부중
 → 형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및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2부 제출)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미납부 ②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부·모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 2부**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수급자 증명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생계 및 의료
 항목** 지원 여부가 나오도록 발급)

학생 본인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이 부양자인 경우)

☞ **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4. 선발결과 공고 : 2023. 11월 중

영동군 및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 게시

5. 장학금 지급

- 지급 일 : 2023. 12월초
- 지급정지 :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경우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함
 (단,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6. 장학생 배정인원

- 영동인재 장학금(신설)(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 인원 결정)

구분	고등학교	1학년 선발인원	2학년 선발인원	3학년 선발인원
영동인재 장학금 (고등학생)	총 계	13	12	11
	영동고	6	5	5
	영동미래고	3	3	3
	영동산업과학고	2	2	1
	황간고	1	1	1
	학산고	1	1	1

- 신청자격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순위가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1등급 이내인 자
 - ※ 단, 평균 1등급 이내에 학생이 없을 경우, 상위 3등급 이내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지급
- 영동인재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학교당 배정인원 추천

- 우수 장학금(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 인원 결정)

구분	고등학교	학생 수 '23.5.31.기준	비율	선발 인원	추천인원 (130%)
우수 장학금 (고등학생)	총 계	850	100	70	88
	소계	850	100%	67	88
	영동고	382	45%	30	39
	영동미래고	232	27%	18	24
	영동산업과학고	136	16%	11	14
	황간고	66	8%	5	7
	학산고	34	4%	3	4
	관외고			3	

-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영동인재 장학금 우선 선발 후 우수 장학금 선발 요청

- 우수졸업생 장학금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학교별로 내년도 졸업예정자 중에서 1명 추천

☞ 추천시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장학금 2회 수령한 학생인지)
 ☞ 우수졸업생 장학금 추천자는 우수 및 영동인재 등 타 장학금에 중복 선발 불가

7. 행정사항 [접수 담당자 협조 사항]

- 읍·면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서류 접수 시 **선발기준 및 자격유무 확인 후 접수**
 - 주민등록 거주확인 :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건강보험료 납부액, 거주기간, 가족 수, 수급자 확인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백분위환산 점수 확인필**
 - ※ 성적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 대학교의 성적 담당자의 백분위 점수 기재(테이프 처리) 여부 확인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여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복사필**
 - ※ 대리 신청은 부 또는 모에 한함
- 장학생 신청서 원본 및 엑셀 파일 제출(읍·면·학교 → 군청)
 - ☞ **2023. 11월 중**
 - ※ 읍·면에서는 대학생, 희망(북한이탈주민자녀) 접수, 초·중·고는 학교에서 접수
 - ☞ 관외고등학교는 가족행복과 직접 접수

우 수	우수졸업	희 망	특기(개인)	난계국악

장 학 생 신 청 서 (개인)				
학생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학생			학생의 휴대폰번호
	보호자(학생과 주소 다를때만 기록)			
학교명	학교	과	학년	
특기종목 (특기생)	대 회 명		대 회 일	
	대 회 주 관		입 상 성 적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휴대폰번호	관내 거주기간(초본 상) ※부, 모, 본인 중에서 영동군에 마지막으로 전입한날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		가 족 수 ※ 학생 본인제외 영동군 거주중인 직계가족
부: 모:	부: 모: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명
3대 거주 (등본 상 동일 주소에 3대 거주 여부)	여 · 부	다문화가정		여 · 부
건강보험료(금액)	부: 모:	기초수급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첨부)		여 · 부
<p>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로 작성 신청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1조제2호에 의거 장학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p> <p>붙 임 1.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초본 1부. (등본 초본 둘 다 제출) - 초본은 과거주소이력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주소가 다른 사람만)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표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8월 고지금액) 6.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대학생만) ※ 원격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 포함 7. 입상증명서(상장 사본 등) 1부. (특기생-개인) 8. 국악 재학증명서(국악장학생만 - 고등학생은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p>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수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붙임 1-2]

※ 해당분야에 “○” 하십시오

고등학생	대학생

영동인재장학금 신청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학생	학생의 휴대폰 번호	
	보호자(학생과 주소 다를때만 기록)		
학교명	학교	과	학년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휴대폰번호	관내 거주기간(초본 상) 부, 모, 학생 중 영동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기준	
부: 모:	부: 모: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p>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로 작성 신청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1조제2호에 의거 장학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p> <p>붙 임 1.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초본 1부. (등본 초본 둘 다 제출) - 초본은 과거주소이력 포함</p> <p>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p> <p>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표기)</p> <p>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p> <p>6.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대학생만)</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수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p> <p>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p>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 학생 신청서 (특기 단체전 - 대표자가 작성)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 . .
주소		휴대폰번호	학생: 보호자:
학교명	학교	과	학년
특기종목		입상인원	
대회명		입상성적	
대회주체		입상횟수	

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로 작성 신청 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1조 2호에 의거 장학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붙임 1.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초본 1부. (입상자 전원) (등본 초본 둘다 제출)
 - 초본은 과거주소이력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입상자 전원)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주소가 다른 사람만)
 4. 입상증명서(상장 사본 등) 각 1부.
 5. 입상자 명단 1부. (단체)
 6. 기타 증빙서류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수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장학생 선발 Q&A

◎ 수혜자격

1.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수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A.** 군민장학금의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영동군에 주소를 둔 학생 (학생 본인이 영동군 주소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주소가 영동이면 신청 가능)
※ 장학생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도 해당됩니다.

2.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A.** 올해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엔 선발제외 대상이며,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 된 분은
그쪽 기관에서 중복수혜를 금지하였는지 확인해주세요.
(A기관의 선발 기준에 다른 곳(영동군)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선발기준

3. 대학교 성적을 백분위 환산점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A.**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A.** 건강보험료는 20점 만점으로 1개월치(8월 납부액)가 얼마인가에 따라 소수점단위로 적용됩니다.(예: 10.52)
※ 8월 휴직자의 경우,
7월 보험료로 산정하오니 휴직증명 및 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5. 동점자의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A.** 동점자의 경우엔 1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가 우선 선정되며, 2차로 거주 기간이 긴 자가 선정됩니다.
단, 희망장학금의 장애 부문은 1차로 장애 정도가 큰 자,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6. 3대 거주 란 무엇인가요?

- A. 조부모, 부모, 본인이 모두 주민등록 등본상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

7. 대학교 직전학기 **백분위환산점수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 또는 종합서비스센터에 장학금 신청용이라는 용도를 밝힌 후, 담당자에게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신 후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및 투명 테이프 처리**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A.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상기간 : **2023년 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민원센터 클릭(메인화면 중앙)
-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 선택항목 중 세부보험 : 건강보험료만 선택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민원센터 클릭(메인화면 중앙)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후 전체내역 출력

② **방문발급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 ☞ 건강보험공단 영동출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 6길 39(매천리)
-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③ **팩스 및 우편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인 확인 후 전송 요청

9.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나요?

A. 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기타

10.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부모(조부모)는 영동거주, 본인은 타지역 거주시에만 위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조부모)가 영동군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조부모)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양측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는 타지역 거주, 본인은 영동 거주시에 본인 것만 제출

11.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별(고등학교) 배정인원은 어떻게 정한건가요?

A. 각 학교별 전체 학생 수에 따른 비율로 배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 학교알리미에 공시(5월 기준)된 인원수 기준으로 배정됨)

12.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되지 않으며 당연무효처리 됩니다.(우편접수 불가능)

13.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해야 하나요?

A. 부모님 또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모는 타지역 거주, 본인은 영동 거주 시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14. 재학 중 2회 이상 영동군민장학금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예를 들어 A중학교 재학 중 군민장학금을 2회 받은 A군이 B중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과정별 2회)

예시)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령, 중·고·대학교 재학중 최대 2회

15. 특기생 단체전 입상자들은 선발하지 않나요?

A. 단체전 입상자들을 따로 선발합니다. 장학금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팀당 상한액 1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팀당 상한액 200만원)이며 **특기 단체 분야는 전체 720만원 한도내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EX> 초등학생 13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 12명 분량인 120만원만 지급 (상한선 초과로 10만원 제외)

고등학생 15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 상한액을 초과함으로 13명 분량인 195만원만 지급